

청주교육대학교장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3. 12. 2

발 의 자 : 김문천의원

1. 수정이유

- 청주교육대학교 장학생 지급대상 인원과 초등교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각각 축소 및 연장하고, 장학금 지급기간에 대한 한시적 규정을 두어
-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부담을 두어 해소와 아울러 도내 일반대학생과의 장학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여 동 조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청주교육대학교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을 동 조례에 명시하고 그 규모를 축소(제3조)
 - 100명 → 50명
- 초등교사의 의무적 복무기간을 연장(제7조)
 - 3년 → 4년
- 장학금 지급기간을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때까지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 삽입 함.(부칙 제2항)

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

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3조 중

- “장학생의 수는” 를
- “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이내에서” 로 한다.

○ 안 제7조 중

- “3년이상” 을 “4년이상” 으로한다

○ 부칙 제2항 중

- “이 조례는 청주교대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” 를
- “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지급은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단, 지급기간은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장학생 수) 장학생의 수는 매년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수급전망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	제3조(장학생수) 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 이내에서 매년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수급전망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
제7조(복무의무) ①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공립초등학교에서 3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.	제7조(복무의무) ①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공립초등학교에서 4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.
부 칙	부 칙
②(적용례)이 조례는 청주교대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	②(적용례)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지급은 청주교육대학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단, 지급기간은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.